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9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이성윤 · 문진석  
한준호 · 박상혁 · 정준호  
김남근 · 서영석 · 최민희  
문대림 · 서영교 · 박균택  
최혁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,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,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, 피신고자의 소속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·감독하는 공공기관,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·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5조 및 제67조제4호).



##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 중 “위원회”를 “감사원 또는 위원회”로 한다.

제67조제4호 중 “고소”를 “신고·고소”로 하고, “경우”를 “경우.”로 하며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는 공직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패행위 신고 보호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 및 제6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